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보사 규정

제정 2018.06.04.

일부개정 2023.03.16.

전부개정 2026.10.23.

전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보사 '디지스트신문 DNA'는 원내 학생 자치 언론단체로서 구성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 보도와 지식·교양의 증진에 기여하며, 책임 있는 언론인으로서 기자의 자질을 함양함을 그 사명으로 하고, 건전한 비판 정신과 자유로운 공론의 형성을 바탕으로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을 촉진하여 민주적이고 성숙한 대학 문화의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언론의 자유와 학생 자치의 가치를 수호하고 학보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 있는 보도와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라 한다)의 학생단체로 학보를 발행하는 기관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보사(이하 '학보사'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보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념)

- ① 학문과 지식의 보급 및 DGIST 구성원의 교류 강화를 도모한다.
- ② DGIST 내외 문화행사 및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추구한다.
- ③ DGIST 구성원의 정서 함양을 도모한다.

④ DGIST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한다.

제4조(위치) 학보사 사무실은 DGIST 내에 둔다.

제5조(사업) 학보사는 학보사 규정 제3조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① 학보의 발행 및 보급
- ② DGIST 구성원 모두가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각종 문화 행사 및 활동 취재
- ③ 기타 학보사 이념에 부합하는 사업

제6조(기본권과 자율성)

- ① 학보사는 「대한민국헌법」 및 관계 법령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향유한다.
- ② 학보사의 취재·편집 및 보도 활동은 제1항의 기본권에 기초하여 보장된다.
- ③ 원내 규정이 제1항의 기본권 또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위법을 우선 적용한다.
- ④ 기사의 작성 및 발행 과정에서 누구든지 사전검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학보사 기자의 취재·편집 및 보도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중립과 독립의 원칙

제7조(독립의 원칙) 학보사 기자는 자유와 공정을 근본으로 하는 언론인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취재와 편집에 있어서 엄정중립과 독립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8조(겸임 금지) 학보사 기자(수습기자 이상의 전원)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타 학생단체장이 될 수 없다. 학보사 기자의 중립과 독립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편집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다만 학보사 기자의 피선거권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3장 조직

제9조(조직원) 학보사에 사장과 주간, 편집장, 부편집장을 둔다.

- ① 사장은 DGIST 총장이며, 발행인을 겸한다.

- ② 주간은 DGIST 교수 중 편집회의에서 의결해 사장이 임명한다.
- ③ 주간의 임기는 4개 정규학기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주간은 학보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 ⑤ 편집장은 학보사 기사를 대표한다. 기사 발행, 학보 발행 등을 총괄하며 편집회의를 주도한다.
- ⑥ 부편집장은 편집장을 도와 기사 발행, 학보 발행 등 학보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0조(학보사 조직 구성)

- ① 학보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보사 안에 부서를 둘 수 있다.
- ②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 의결에 따라 부서를 신설·변경·폐지할 수 있다.
- ③ 부서장은 정기자 중 편집회의에서 의결하여 편집장이 임명한다.
- ④ 부서의 역할은 편집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11조(편집장, 부편집장)

- ① 편집장은 학보사 기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지 2개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중 편집회의의 의결을 통해 주간이 임명한다.
- ② 부편집장은 학보사 기자로서 직무를 수행한 지 1개 정규학기를 초과한 자 중 편집회의의 의결을 통해 주간이 임명한다.
- ③ 편집장과 부편집장의 임기는 2개 정규학기이며, 연임 가능하다.
- ④ 편집장이 일시적인 부재,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편집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직무대리 기간은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로 한다.
- ⑤ 편집장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는 부편집장이 편집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 기간은 후임 편집장이 임명될 때까지로 하되, 기존 편집장의 잔여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학보사 기자)

- ① 학보사 기자는 기사의 취재, 편집 및 발행 업무를 수행한다. 임기는 2개 정규학기이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학보사 기자는 수습기자, 정기자, 전문 기자로 구분한다.
- ③ 정기자는 2개 정규학기 이하 일정 수습 기간을 거친 수습기자 중에서, 정기자 전환 투표

를 거쳐 기존 정기자 전원의 찬성을 얻은 자를 편집장이 임명한다.

- ④ 학보사 기사를 연임하기 위해서는 매 학기 재등록해야 한다.
- ⑤ 수습기자로 채용된 후에는 학보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편집장은 수습기자의 수습 기간이 종료된 후 적성을 고려해 각 부서로 배정한다.
- ⑥ 편집장은 수습 기간 중 성과에 따라 수습기자를 정기자로 전환하지 않고 편집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수습기자 채용)

- ① 수습기자는 매년 초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DGIST 학부 재학생 중 1개 정규학기 이상 4개 정규학기 이하로 등록한 자 중 선발한다.
- ② 수습기자는 DGIST 학부 재학생 중에서 지원을 받아 편집장이 선발해 임명하고, 실무교육을 한 후에 맡은 임무에 임하도록 한다.
- ③ 수습기자 채용은 편집장이 관장하는 전형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 ④ 수습기자 채용은 매년 1학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학기에도 채용할 수 있다.
- ⑤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5개 정규학기 이상 6개 정규학기 이하 등록한 자를 수습기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제14조(전문 기자)

- ① 편집회의에서 전문 기자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DGIST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수습기자 채용 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전문 기자로 채용할 수 있다.
- ② 전문 기자는 대학원에서 개최되는 학술 행사나 대학원 내 활동을 취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문 기자도 학보사 기자에 속해 편집회의에 참가해야 하며 장학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 ④ 전문 기자는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거치며, 졸업까지 2개 정규학기 이상 남은 자만 선발한다.

제15조(활동 범위 및 의무)

- ① 학보사 기자는 학생의 본분을 지키고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사 취재와 편집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② 학보사 기자는 편집회의에 참가해야 하며, 취재·편집·발행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 ③ 학보사 기자는 자질향상과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 ① 학보사는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보사 외부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는 학보사의 운영, 기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
- ③ 자문위원회의 목적, 활동 내용, 구성 및 선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편집회의에서 정한다.
- 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 활동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편집회의)

- ① 편집회의는 편집장을 비롯한 학보사 기자로 구성된다.
- ② 편집회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신문 발행을 위하여 편집기획과 발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신문 제작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 ③ 편집회의는 주기적으로 편집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학보사 기자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편집회의는 학기 중 한 달에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 ④ 편집회의 안건은 재적 학보사 기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편집장이 결정한다. 안건은 거수투표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결하되, 필요에 따라 일부는 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 ⑤ 편집회의에서는 지면 신문 발행, 예산 결재와 집행, 취재 요청 기사 작성 여부, 학보사 기자의 학생단체 가입 가능 여부, 기자 임기 연장, 수습기자의 정기자 전환, 부서장 임명 등을 의결할 수 있다. 편집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은 서기가 회의록에 기록해 보관한다.
- ⑥ 편집회의는 편집장 및 부편집장의 탄핵과 학보사 기자의 해임 및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 ⑦ 편집회의에서는 주간 제청을 할 수 있으며 제청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장이 임명한다.
- ⑧ 편집회의에 출석한 학보사 기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학보사 운영

제18조(발행 및 인쇄)

- ① 학보는 연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편집회의에서 의결해 주간의 승인을 거쳐 발행을 연기하거나 특별호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학보는 최소 2면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④ 학보사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기사를 발행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지면 신문 발행으로 인해 누리집 기사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19조(집필 및 편집)

- ① 기획, 취재, 편집 등 학보사의 모든 활동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 ② 기사 원고는 발행 전에 편집장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학보사 기자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자 개인의 의견과 주관에 드러나는 오피니언을 작성할 수 있다.
- ④ 학보사에서 발행하는 오피니언은 학보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
- ⑤ 학보사에서 발행하는 모든 기사는 발행 전 학보사 기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재 및 사실관계 확인 등 기사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기사 내용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 ⑥ 학보사는 외부 기고를 받을 수 있으며, 기고 원고의 심의 및 편집에는 이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배포)

- ① 모든 기사는 학보사 공식 누리집에 게시되어야 한다.
- ② 필요한 경우 기사를 학보사 공식 메일로 DGIST 구성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 ③ 지면 신문은 학생생활관, 학술정보관, 컨실리언스홀(E7)을 포함해 최소 4곳 이상 배포대를 설치하여 배포해야 한다.
- ④ 지면 신문의 PDF 파일이나 사진 파일은 학보사 공식 누리집에 게시되어야 한다.

- ⑤ 배포에 관한 모든 안건은 편집회의에서 의결한다.

제21조(저작권)

- ① 모든 기사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기사를 작성한 학보사 기자, 사진을 촬영한 사진기자가 가진다. 외부 기고의 경우 저작권은 작성자가 갖는다.
- ② 필요한 경우, 편집회의를 거쳐 기사와 사진을 가공하거나 재배포할 수 있다.
- ③ 학보사 기자가 직위를 상실한 경우, 해당 기자가 학보사 활동 중 작성한 기사와 촬영한 사진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학보사에 귀속된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2조(기록)

- ① 편집회의마다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 ② 편집장은 예산서와 결산서, 활동 보고서를 학기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

제23조(휴학)

- ① 학보사 기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휴학할 경우 학보사 기자 자격이 일시 중지된다. 단, 학보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휴학을 하는 경우 편집회의 의결을 통해 기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② 복학한 후에는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학보사 기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24조(학보 제호) 학보와 학보사의 제호는 '디지스트신문 DNA'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5조(운영비)

- ① 학보사의 재정은 DGIST 교비로 한다.
- ② 학생 행사 등의 제반 비용이 필요할 경우 DGIST 교비 혹은 학생회비로 추가 예산을 받을 수 있다.
- ③ 학보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 따라 편집회의 의결을 거쳐 편집장이 결재 및 집행한다.

제26조(회계연도) 학보사의 회계연도는 DGIST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27조(예산 및 결산) 학보사의 예산안과 결산안은 편집회의에서 의결한다.

제6장 상벌

제28조(연수) 기자의 견문을 넓히고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표창)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편집회의에서 의결해 주간이 표창할 수 있다.

- ① 학보사 기자와 자문위원으로서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
- ② 졸업 예정자 중 학보사 재임 시 공로가 많았던 자

제30조(징계) 편집회의는 학보사 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 그 자를 징계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학기당 3회 이상 편집회의에 불참한 자
- ② 정당한 이유를 들어 3회 불참한 경우 1회 무단 불참으로 간주한다.
- ③ 기사 작성과 학보 편집 등의 제반 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상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자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 ④ 취재 중 취득한 사실이나 편집회의에서 취득한 정보를 편집장의 허락 없이 기사 발행 전에 누설하거나 공표한 자
- ⑤ 취재비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제31조(해임)

① 편집회의는 학보사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자를 해임할 수 있다.

- 1. 학칙을 위반하여 중징계를 받은 자
- 2. 학보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 학보사의 운영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자
- 3. 학보사 내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자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임하지 않을 수 있다.

- 1. 언론 활동 중 받은 징계로서 해당 보도가 DGIST를 포함한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학생 사회를 위한 활동 중 받은 징계인 경우

3. 상위법에 어긋나는 사유로 받은 징계인 경우

제7장 기타

제32조(취재 요청)

- ① 학보사 내 편집회의에서 논의된 기사 외 취재 요청에 대해서는 요청자가 소정의 원고료와 취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요청자가 DGIST 구성원인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취재 요청은 학보사 메일 등 공식 소통 창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33조(보호 의무)

- ① 학보사 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 ② 취재원이 신분 비밀보장을 요청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취재원의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③ 취재원이 기사 삭제를 요청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알 권리가 취재원의 기사 삭제 요청에 따른 이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기사를 유지할 수 있다.

제34조(지원 의무)

- ① 총장을 비롯한 교원, 직원 등은 학보사가 자율적인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시공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② 학보사 기자는 운영 규정에 따라 부여된 권리와 일반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며, 총장을 포함한 전 교원과 직원은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 ③ 학보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DGIST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제기)

- ①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DGIST 학부생의 이의제기를 받을 수 있다.
- ②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이전에 DGIST 공식 메일을 통해 규정 전문을 보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규대조표를 첨부해야 한다.

- ③ 이의제기 기간은 일주일 이내로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은 이의제기 기간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 ④ 이의제기의 내용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과 명백히 관련이 없거나, 동일한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편집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제36조(운영 세칙) 본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회의에서 의결해 세부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임명된 주간과 기구별 학생조직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